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1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김예지・서미화・최수진

김소희 · 김선교 · 박덕흠

고동진 · 강대식 · 신성범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 ⑦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⑧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
	애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애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